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. 7. 21 선고 2015가합11743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

피고1. 주식회사 A

2. B

3. C

변론 종결2016. 7. 7.

판결 선고2016. 7. 21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주식회사 A, B는 연대하여 557,401,972원 및 그 중 171,357,657원에 대하여는 2015. 6. 10.부터, 386,039,678원에 대하여는 2015. 6. 24.부터 각 2016. 4. 5.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

나.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, B와 연대하여 제1의 가항 기재 돈 중 300,180,259원 및 그 중 171,357,657원에 대하여는 2015. 6. 10.부터, 128,817,965원에 대하여는 2015. 6. 24.부터 각 2015. 8. 3.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주식회사 A, B에 대하여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나. 피고 C에 대하여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재판장판사김형석

판사김유신

판사황경환

별지